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2일,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인철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민·관합동조사단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응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제3자 제공 및 일반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 대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공개하는 경우로 금지행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예고·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예고·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